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법정 의무교육 및 필수교육

2021년 4월

번호	교육명	구분	내용	
1	**아동학대 예방교육** **평가지표** **3-5-2-①**	근거	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	
	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	
		교육횟수	연 1회	
		교육정보	·온라인교육	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(https://lms.educare.or.kr/lms/intro.edu)
			·집합교육	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
		관련문의	1577-0756/052-285-0756	
2	**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** **평가지표** **3-5-2-①**	근거	아동복지법 제26조,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	
	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	
		교육횟수	연 1회	
		교육정보	·온라인교육	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(https://lms.educare.or.kr/lms/intro.edu)
			·교육자료	아동권리보장원 (http://korea1391.go.kr/new/bbs/board.php?bo_table=edu_notice)
			·집합교육	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
		관련문의	1599-3665/02-6283-0200/052-285-0756	
3	**안전교육** **평가지표** **3-5-2-①**	근거	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8]	
		대상	원장, 담임교사(반을 맡지않은 경우 포함), 연장보육 전담교사	
		교육횟수	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	
		교육정보	·교육자료	어린이집 안전공제회-안전교육시스템 (http://e.csia.or.kr/index/s3/s3_1.php)
			·집합교육	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
		관련문의	1600-0611/052-285-0756	
		※ 2021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(p124) -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사고예방교육을 **어린이집당 1인 이상**은 참여하여야 함		
4	**응급처치 (심폐소생술) 교육** **평가지표** **3-5-2-③**	근거	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15	
		대상	보육교직원 중 1명 이상	
		교육횟수	현장평가 월 기준 1년 이내 1회	
		교육정보	울산광역시소방본부 (https://fire.ulsan.go.kr/cop/bbs/selectBoardList.do?bbsId=fireEduNotice) 응급처치교육통합네트워크센터 (https://cpr.busan.go.kr/)	
			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	
		관련문의	1600-8810/051-760-3106/052-285-0756	
		※ 교육과정 내 **실습이 포함**되어야 함		

번호	교육명	구분	내용	
5	보육교직원 역량개발 교육 평가지표 4-4-1	대상	원장, 담임교사(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)	
		교육횟수	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	
		교육정보	어린이집 자체교육, 외부교육(학회, 워크숍,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 등), 온라인 교육 등	
		관련문의	1577-0756/052-285-0756	
		※ 영유아 발달, 보육과정, 상호작용 등에 관한 교육		
6	직무교육 (보수교육) 평가지표 4-4-1	대상	원장, 담임교사, 연장보육 전담교사	
		교육횟수	만 2년 마다	
		교육정보	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 (http://chrd.childcare.go.kr/)	
		관련문의	1661-5666/관할 지자체	
		※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하는 해에 특별직무교육, 승급교육, 원장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,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		
7	장애인식 개선교육	근거	장애인복지법 제16조(장애인식개선교육), 제25조제2항	
	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	
		교육횟수	연 1회	
		교육정보	·온라인교육	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(https://www.able-edu.or.kr/elearning)
			·교육자료	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(https://www.able-edu.or.kr/user/board/3/selectBoardList.do)
			·집합교육	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
		관련문의	1522-0495(내선2)/1522-0495/052-285-0756	
		※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(able-edu.or.kr)시스템에 교육 실적 등록 필요		
8	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	근거	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1항	
	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	
		교육횟수	연 1회	
		교육정보	·온라인교육	한국장애인고용공단 (https://www.kead.or.kr)
		관련문의	1522-0495(내선2)	
9	성폭력 예방교육	근거	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의무)	
	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	
		교육횟수	연 1회	
		교육정보	·교육자료	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 교육자료 (http://www.mogef.go.kr/oe/olb/oe_olb_s002.do?mid=etc605&div2=403)
			·집합교육	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
		관련문의	052-285-0756	
		※ 예방교육통합관리(shp.mogef.go.kr)시스템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 필요		

번호	교육명	구분	내용	
10	성희롱 예방교육	근거	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	
		대상	5인 이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	
		교육횟수	연 1회	
		교육정보	·교육자료	여성가족부 성폭력예방 교육자료 (http://www.mogef.go.kr/oe/olb/oe_olb_s002.do?mid=etc605&div2=405)
			·집합교육	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
		관련문의	052-285-0756	
11	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	근거	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	
	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	
		교육횟수	연 1회	
		교육정보	·온라인교육	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(https://in.kohi.or.kr/index.do)
		관련문의	1600-8810	
12	개인정보 보호교육	근거	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(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)	
		대상	개인정보의 이용,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	
		교육횟수	연 1회	
		교육정보	·온라인교육	행정자치부 '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' (https://www.privacy.go.kr/)
			·집합교육	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
		관련문의	법령문의 061-820-2707/교육문의 02-6952-8650/052-285-0756	
		※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(지정)한 민간기관이 없음. 교육관련 스팸(팩스) 신고 : 118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(https://spam.kisa.or.kr)		
13	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	근거	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, 제 93조의 11	
	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	
		교육횟수	연 1회 1시간 이상	
		교육자료	고용노동부(https://www.moel.go.kr/policy/policydata/list.do) 정책자료실에서 '직장 내 괴롭힘' 검색	
14	영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및 대응교육	근거	2021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p128	
		대상	어린이집 영유아 성 교육 담당자(담당자 교육 이수 후 보육교직원에게 전달교육)	
		교육횟수	연 1회	
		교육정보	·집합교육	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
		관련문의	052-285-0756	
15	등·하원 안전교육	근거	영유아보육법 제 33조의 3 (2021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p126)	
		대상	보육교직원	
		교육횟수	연 1회	
		교육정보	보육사업 안내 추가 개정사항(21.3.25.) **1)영유아 등·하원 방법,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** **2)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등·하원 방법 등에 대해 부모 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** **3)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 등·하원시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직원이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**(지정된 보호자) *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'안전교육' 내용에 포함되어있음	

번호	교육명	구분	내용
16	건강·영양 교육 평가지표 3-3-3	대상	원장, 담임교사(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)
		교육횟수	연 1회(현장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)
		교육방법	어린이집 자체교육, 외부 집합교육, 온라인 교육 등
		교육내용	영유아 건강·영양 교육 및 일상생활 지도에 도움이 되는 지식, 지도방법 등
17	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	근거	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(의무)
		대상	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(담당 보육교직원)
		교육횟수	·신규교육: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,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,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이내 ·보수교육: 2년마다 1회
		교육정보	한국생활안전연합 (https://playsafety.or.kr/)
			대한산업안전협회 (https://edu.safety.or.kr/front/Common.do?cmd=goDomain)
			한국안전교육협회 (http://koreakid.co.kr)
		관련문의	02-3476-0119/052-267-1500/055-352-2276
18	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 안전교육 평가지표 3-4-3-③	근거	도로교통법53조3항(의무)
		대상	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
		교육횟수	·신규 안전교육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 ·정기 안전교육: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
		교육정보	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(https://trafficedu.koroad.or.kr:8443/home/main/index)
		관련문의	1577-1120
19	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평가지표 3-4-3-③	근거	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[별표8] 어린이집 운영기준(제23조 및 제34조 관련)
		대상	보육교직원(차량동승자)
		교육횟수	·신규 안전교육: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·정기 안전교육: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
		교육정보	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(https://trafficedu.koroad.or.kr:8443/home/main/index)
		관련문의	1577-1120
20	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	근거	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(의무)
		대상	연면적 430㎡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 책임자
		교육횟수	·신규 안전교육: 임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·정기 안전교육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
		교육정보	환경보전협회 (https://www.kepaedu.or.kr/edu/view.do?idx=16)
		관련문의	1577-7389

번호	교육명	구분	내용
21	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	근거	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, 시행규칙 제33조(의무)
		대상	연면적 430㎡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, 법인어린이집,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 책임자 (관리책임자-담당 보육교직원)
		교육횟수	·신규교육: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(교육시간 8시간) ·보수교육: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(교육시간 4시간)
		교육정보	·신규교육: 석면관리종합정보망(https://asbestos.me.go.kr/user/main.do) ·보수교육: 국립환경인력개발원 (https://ehrd.me.go.kr/kor/edusch/eduschList.do?menuNo=110001)
		관련문의	1661-4072/032-560-7777
22	식품위생 교육	근거	식품위생법 제41조 (의무)
		대상	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(조리사, 영양사 등)
		교육횟수	연 1회
		교육정보	한국식품산업협회 (http://www.kfia21.or.kr/)
		관련문의	1577-3869
23	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	근거	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(위험성평가)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-104호(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)
		위험성평가	연 1회 의무 시행, 시행 후 3년간 문서보관
		사업주교육	연 1회
		교육정보	안전보건교육포털 (https://www.koshats.or.kr:8443/)
		관련문의	위험성평가 052-226-0534/사업주 교육 051-520-0554
24	new 어린이 안전교육 (응급처치 실습 포함)	근거	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어린이안전법) 제16조 (주무부처:행정안전부) *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('20.11.27) *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(어린이 대면업무 수행자)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		대상	모든 보육교직원(어린이 대면업무 수행자)
		교육횟수	연 1회 (4시간 이상 - 이론 2시간+실습 2시간)
		교육정보	*행정안정부에서 지정 한,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*어린이안전법 정보(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.mois.go.kr) - 정책정보 : [업무안내-안전정책실-어린이안전관리 제도] -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: [뉴스소식-새소식-알립니다]
		관련문의	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(044-205-4229)/울산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(052-285-0756)

※ 상기 내용은 법령 개정, 교육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